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 의 자 : 진성준·임오경·김교홍
강준현·황명선·안호영
정태호·위성곤·이학영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,517명에서 2020년 14만 2,547명으로 약 6.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.

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. 또한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

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).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바퀴형 이동 보조기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사용 교육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바퀴형 이동 보조기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사용 교육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제7조의2(<u>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</u>) 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</u> ②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